

2025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
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14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근무예정부서	직무내용
영상PD	한시임기제 (8호)	1명	임용일 ~ 2026. 6.30.	강북구 의회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관리○ 방송 프로그램 제작 (기획, 촬영, 편집, 연출, 편성, 홍보물 제작 등)○ 의정 주요 영상 및 사진 기록○ 인터넷 방송국 장비 관리○ 방송사 영상제공 및 모니터링 등○ 카드뉴스 제작○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
※ 계약기간

- **한시임기제 공무원:**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, 휴직자의 휴직 기간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 및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) 및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자세한 내용은 현행법령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- 연 령 : 18세 이상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구 분	응시 자격 요건 (※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)
영상PD (한시임기제8호)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, 공공·민간기관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(기획, 촬영, 편집 등) 및 방송운영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작업 가능자 - 방송국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(기획, 촬영, 편집, 연출, 편성, 홍보물 제작 등) - 뉴스, 행사 등의 동영상 기획 및 촬영 등 - 넌리니어 및 마스터 편집 ex) Finalcut, Premiere 등 편집 프로그램 사용 - 모션 그래픽 등 S/W 사용 ex) After Effects, Photoshop, Illustrator, 기타 편집 프로그램
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, 한시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(경력증명서 발급은 공고일 기준 **3개월 이내 발행분**에 한하여 인정,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- ※ 민간기관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
4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임용예정일: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(예정)
- 임용기간:
 - 한시임기제공무원(영상PD): 임용일 ~ 2026. 6. 30.
 - ※ **한시임기제 공무원: 계약기간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, 휴직자의 휴직 기간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**
- 보수(봉급):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봉급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-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(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0조의 4관련 별표 30의 2)

구 분	봉급월액	주35시간 기준	비 고
한시임기제 (8호)	2,231,000원	<u>1,952,120원</u>	주35시간(주 5일 근무) ※ 근무시간 협의

※ 봉급 외 수당 등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응시원서 접수
 - 접수기간: **2025. 11. 25.(화) ~ 11. 27.(목) 09:00~18:00** [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] 제외
 - 접 수 처: 강북구의회 사무국 인사팀 [우]01036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9(수유동, 강북구의회)]
 - 접수방법: 방문(본인 또는 가족)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☞ **등기우편: 빠른등기로 접수 부탁 드리며, 사전에 사무국(☎02-901-4514)으로 유선 연락 요망**
 - 팩스, 이메일, 택배, 퀵서비스 접수 허용하지 않음
 -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-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, 가족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및 신분증 지참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변경 불가
- ※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(5,000원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 -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날인
[강북구청 :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역 8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)]
 - 단,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수수료(5,000원)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 (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)
- 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24시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 - **빠른등기로 접수 부탁드리며, 사전에 사무국(☎02-901-4514)으로 유선 연락 요망**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접시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	일시	장소	
2025. 12. 3.(수) 예정	2025. 12. 8.(월) 예정	강북구의회 내 (추후 통보)	2025. 12. 11.(목) 예정

※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(council.gangbuk.go.kr)에 게시

※ **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**
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합격자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,000원

[강북구청(수유역 8번 출구 도보 3분)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날인]

- 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

- 이력서(별지 2호 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 3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 계획서(별지 4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5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7호 서식) 1부 (* 병역사항 확인 동의서류로 남성만 제출)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, 학위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- **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**
 - 근무기간(연·월·일), 직위(급)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, 발행기관 직인 포함),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 - ※ 공고일 이전의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,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입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의회 사무국 인사팀(☎02-901-4514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 끝.